

제 240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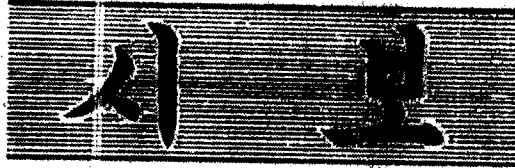
1972. 6. 5.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양 덕 사

편집장 : 공보실장 손활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중앙발간소



차 례

- ◎ 고 시 3
 - 제 75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 3
 - 제 76호 도시계획 소로일부변경 3
- ◎ 공 고 4
 - 제 12호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위소 4
- ◎ 사 령 4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5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물 등조례 제 8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2. 5. 25.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목록

지 정 번 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지 정 년 월 일
지방문화재 제 4 호	낙성대 (落星臺)	영등포구 봉천동 218	72.5.25
제 5 호	장엄원구기 (淨業院舊基)	동대문구 송인동 5-4	"
제 6 호	용양봉지정 (龍陽鳳臺)	영등포구 본동 10-4	"
제 7 호	성제묘 (聖帝廟)	중구 만산동	"
제 8 호	사육신묘 (死六臣墓)	영등포구 노량진동	"
제 9 호	종친부 (宗親府)	종로구 사간동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76 호

도시계획소로 일부변경

1. 서울특별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은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2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제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노선변경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	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기정	소로	2		8-10m	500m	급호동로	사리	신당동	58-60	위치	일부	변경	
변경	"	"		8-10m	500m	"	"	"	"	"	"	"	"
기정	"	"		6m	20m	사계동	300-1	사계동	293-2	"	"	"	"
변경	"	"		"	20m	"	"	"	"	"	"	"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

1972. 6. 2.

서울특별시 장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22호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

하천법제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취소하였기 공고 한다.

1972. 5.

서울특별시

허가 년월일	허가장소	수년 종류	공사목적	공작물개요	허가받은자의 주소, 성명	허가취소 년월일	허가취소 사유
	영등포구 고척동 269 번지선	하천 (준용 하천)	홍로 확보 추진여부 시양여	복개공사 폭 = 2m 높이 = 2m 길이 = 265m	용산구 석계동 39-210 김길호의 1인	72.5.31	허가조건 사항위반

사 령

◎ 72.5.31

공무원교육원
표 학 과

지방간호기원

김귀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1972.6.2.

총무과 서기관(과장) 양재범
환경순찰반장 직무대리 겸직
을 명함.